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등 운임 감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6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30.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② (생략) <u><신설></u>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u>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이 철도와 도시철도 등을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 감면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을 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KTX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	100분의 100

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승자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와 도시철도의 이용료를 감면받고 있음(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철도 및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및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근거 법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등급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상이등급1급 해당하는 사람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자료: 보건복지부

□ 이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경우는 철도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관련 규정에서 원인제공자¹⁾와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익서비스인 이용요금 감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상하고 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1) 국가 부담 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소관부서를 의미함.

-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이용요금 감면 손실액 및 보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용요금 감면 손실액				보상금액	보상비율
	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2019년	259,377	207,721	48,561	3,094	176,400	68.0%
2020년	183,383	146,411	34,890	2,082	167,914	91.6%
2021년	199,522	161,997	35,412	2,113	194,341	97.4%
2022년	234,715	193,804	38,532	2,379	213,165	90.8%
2023년	287,238	222,372	62,081	2,785	203,535	70.9%

주1): 감면손실액 대상열차 : 새마을(ITX-새마을포함), 무궁화(누리로포함), 통근, 전철
자료: 국토교통부

□ 반면, 도시철도는 이 같은 국가에 의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가 공익서비스인 이용요금 감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도시철도운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액은 869억 6,100만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추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장애인	102,761	70,589	74,920	78,895	86,961	414,126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서울특별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무임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나, 보조율은 30%대에서 100%를 상회하는 비율로 각각 달랐으며, 부산광역시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도시철도운영자별 무임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현황>

구 분		'18	'19	'20	'21	'22
서울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3,561	3,763	2,684	2,832	3,209
	시비보조금(억원)	-	-	-	1,000	1,000
	무임비용 보조율(%)	-	-	-	35.3	31.2
부산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1,306	1,396	1,045	1,090	1,234
	시비보조금(억원)	-	-	-	-	-
	무임비용 보조율(%)	-	-	-	-	-
대구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569	614	416	459	512
	시비보조금(억원)	553	559	414	471	486
	무임비용 보조율(%)	97.2	91.0	99.5	102.6	94.9
인천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270	297	213	240	347
	시비보조금(억원)	100	200	200	220	213
	무임비용 보조율(%)	37.0	67.3	93.9	91.7	61.4

광주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89	92	61	61	66
	시비보조금(억원)	84	87	89	83	70
	무임비용 보조율(%)	94.4	94.6	145.9	136.1	106.1
대전 교통 공사	무임비용(억원)	117	122	76	80	92
	시비보조금(억원)	190	192	197	203	128
	무임비용 보조율(%)	162.4	157.4	259.2	253.8	139.1

주1): 법정무임(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한하여 산출

주2): 시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른 손실보조금(다자녀가족 무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법정무임만 예산에서 별도 구분 산출 곤란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공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는 철도와 수도권 전철과는 달리 국가의 비용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용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개정안의 조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관련 규정에서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공익서비스인 이용요금 감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장애인 외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괄적인 국가의 비용 부담을 위해서는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도시철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에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러한 내용의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송비용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68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음(참고자료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안)
주체	국가	국가, 원인제공자
수혜자	장애인	공익서비스 수혜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부담 재원	미규정	운임감면을 규정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부담 범위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	운임 감면액 국가 등의 특수목적사업 수행비용
비용 산정·평가 담당	미규정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
보상계약 체결	미규정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 간 체결
법령 제·개정시 협의	미규정	운임감면 관련 법령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자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재구성

- 다만, 위와 같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으나, 개정안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므로, 독자적으로 개정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철도와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도시철도 운임감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운임감면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닌 공공서비스이므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원할 필요는 있음.
- 다만, 도시철도 운임감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국가유공자 등에도 적용되므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법인 「도시철도법」에 일괄 규정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무임 수송 시행 및 운임 수준

등은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운임 감면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운영기관 지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 안 이 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